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거점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 강화〉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7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명 및 정의	4
2.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6장)	7
3. 보칙(안 제7장) 및 벌칙(안 제8장)	17
※ 참고자료	
1. 관련 기관 의견	22
2. 개별법령상 주요 안전관리 의무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3.
3. 회부연월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관할 산업단지에서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이나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노후설비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6조 신설).
- 다.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라. 노후설비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 신설).
-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2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 마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6장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를 신설하고, 제6장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는 ‘제7장 보칙’(안 제34조 및 제35조)과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는 ‘제8장 벌칙’(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을 신설하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업단법」”)에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하에서는 장별로 보다 상세한 사항을 검토함.

1. 제명 및 정의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노후설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노후설비”란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노후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제6장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더하여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의 주된 규율 사항 중 하나가 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정의 규정(안 제2조)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노후설비”를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업종별 공정 및 설비 특성이 다양하여 규제 대상인 “노후설비”의 대상 및 범위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사한 개념이 안전관리 관련 개별법령¹⁾에도 존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 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재해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11월)

- '노후화'라 함은 그 설비의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 동안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함
- 다만, 동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의 취급하는 설비관리시 적용

2.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안 제6장)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안전점검지침’·‘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노후설비관리자는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등 후속조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장).

[표 2]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6장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u> <u>제26조(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② 노후설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노후설비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이하 “노후설비관리자”라 한다)는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③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노후거점산</u>

<신 설>

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노후설비 관리자는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노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비관리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신 설>

<신 설>

한 결과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노후설비관리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준·방법 및 제출시기,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노후설비의 보수·보강·교체 등 안전조치) ① 노후설비관리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신 설>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기준, 보고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2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2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행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신 설>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먼저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안 제26조)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노후설비관리자(노후설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노후설비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는 이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²⁾의 노후설비에 대하여 보다 체계

2) 「노후거점산업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

적이고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고,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진 노후설비관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전 관련 개별법령 등에 설비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 및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³⁾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후속조치 의무화(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고시하고, 노후설비관리자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수·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후설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고, 안전점검 결과나 사고 발생 시 심층적인 정밀안전

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3)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임.

진단을 통해 중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⁴⁾ 이에 따른 관할기관의 시정조치, 개선계획의 제출, 이행실태 점검, 사고조사, 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법」⁵⁾ 등에서도 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으로 인한 부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규정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복되는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의무 부과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기피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기존 안전 관련 개별법령에도 유사한 안전관리 제도가 존재해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4)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위험물관리법(소방청)」에 따른 위험시설 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산업부)에 따른 전기·가스 안전검사 등

5) 산업 안전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제2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안 제32조)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후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등록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협회나 단체가 있으므로⁶⁾ 추가적으로 안전점검대행 및 정밀안전진단대행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유사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u>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u>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산업안전진단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산업안전보건법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보칙(안 제7장) 및 벌칙(안 제8장)

개정안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장 및 제8장).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7장 보칙</u> <u>제34조(비밀 유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u>

<신 설>

<신 설>

<신 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후설비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9조(과태료)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

	<u>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u> 2. <u>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3. <u>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

이는 개정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점검·진단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거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새로 도입

되는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도 점검·진단 미이행, 정보 누설⁷⁾ 등에 대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사한 제재가 추가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7)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참고 1

관련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 (‘25.5.7)	○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에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다시 구축할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 규제 및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의 부담 가중은 곧 산업단지 입주 기피, 개별입지로의 이전 등이 발생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이는 본 법률의 기본 취지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 와도 상충될 수 있음

참고 2

개별법령상 주요 안전관리 의무

분야	검사명	근거	내용	주기	결과	관련기관	참고
산업 안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의 성능검사	6개월 ~4년	합격 불합격	안전보건 공단	시행령 제78조
화재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1년	합격 불합격	소방청	시행령 별표2
전기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 적합여부	1~4년	합격 불합격	전기안전 공사	시행규칙 별표4
가스	고압가스 시설검사	고압가스법 제16조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 검사	1~4년	합격 불합격	가스안전 공사	시행규칙 별표19
화학 물질	정기검사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정성 검사	1~2년	합격 불합격	환경공단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진단			4~12년	가(4년) 나(8년) 다(12년)		위험도에 따른 주기
위험물	정기점검	위험물관리법 제18조	위험물 사용량에 따라 사업주가 점검 후 보고	1년	합격 불합격	소방서	시행규칙 제64조
	탱크안전 성능검사	위험물관리법 제8조	50만리터 이상의 저장탱크 검사	4년	합격 불합격	소방산업 기술원	시행규칙 제65조
기타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법 제32조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6개월 ~1년	합격 불합격	승강기 안전공단	시행규칙 제54조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제17조	연면적 1만㎡(3천평) 이상 건물의 설비점검	1년	적합 부적합	지자체	시행령 제14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